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수당 확대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66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0호)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동수당 확대	5
2. 주요 검토 사항	13

I. 개요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5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18.

(3) 회 부 일 : 2024. 6. 19.

나.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2호 신설).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7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3.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4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5.
- (3) 회 부 일 : 2024. 7.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아동수당 확대

□ 3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병도 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은 각각 18세 미만, 박민규의원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함. 한편, 한병도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은 현행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한병도의원안은 8세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되,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이수진의원안은 연령구분 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등).

그 외 한병도의원안에서는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제1항제2호 신설),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 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한병도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민규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아동”이란 「아동복지</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u>법」 제3조제1</u> <u>호에 따른 아</u> <u>동을 말한다.</u>		
2. ~ 4. (생략)	2. ~ 4. (현행 과 같음)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u>다</u> <u>음 각 호에 따</u> <u>른 금액을</u> -----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 <u>18세</u> --- ----- ----- <u>30만원을</u> --- -----.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 ----- <u>19세</u> --- ----- -----.
	1. 8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만원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매월 20만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아동수당	제5조(아동수당	제5조(아동수당	제5조(아동수당

[illegible]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A small black dot is located at the bottom left of the page, near the first line.

⑥ -----

----- . 이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의
아동이 8세 이
상 18세 미만
인 경우 그 아
동에게 아동수
당 지급 신청

⑥ (현행과 같음)

	<u>각하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u>8세</u>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① ----- ----- ----- ----- ----- ----- ----- ----- ----- ----- <u>18세</u> ----- ----- ----- ----- ----- ----- <u>다음 각 호에 따라</u> ----- ----- ----- ----- -----	① ----- ----- ----- ----- ----- ----- ----- ----- ----- ----- <u>18세</u> ----- ----- ----- ----- ----- ----- ----- ----- ----- ----- <u>18세</u> ----- ----- ----- ----- ----- ----- ----- ----- ----- -----	① ----- ----- ----- ----- ----- ----- ----- ----- ----- ----- <u>19세</u> ----- ----- ----- ----- ----- ----- ----- ----- ----- ----- <u>19세</u> ----- ----- ----- ----- ----- ----- ----- ----- ----- -----

② 특별자치시 장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은 수급아동 의 보호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 는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 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 · 질 문을 거부 · 방 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 우에는 아동수 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 다. <후단 신 설>	② ----- ----- ----- ----- ----- ----- ----- ----- ----- ----- ----- ----- ----- ----- ----- - 이 경우 수 급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 만인 경우 그 아동에게 아동 수당 지급 정 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 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 사항

-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는 소득기준 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경과 >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재산 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 아동(2019.9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 → 보편지급) (2018.12)
- 개정된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2019.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
- 2022.4월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1~3월분 소급 지급)

- 총액 기준 예산액을 보면, 2018년에는 9,647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임.

< 2018년 도입 이후 아동수당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18년	238	7,096	9,647
2019년	247	21,627	29,657
2020년	263	22,834	30,761
2021년	247	22,195	29,516
2022년	273	24,039	31,560
2023년	250	22,564	29,831
2024년	234	21,114	27,946

* 자료 : 보건복지부

*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은 9월 도입으로 4개월분 예산 반영

*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10%

□ 아울러, 정부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급여’¹⁾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 예산액 >

(단위: 만명, 억원)

연도	예산안 기준		
	지급대상	국비	총액(국비+지방비)
2022년 <영아수당>	월평균 15.1	3,731	5,419
2023년 <부모급여>	월평균 32.3	16,214	23,622
2024년 <부모급여>	월평균 47.2	28,887	42,267

- * 자료 : 보건복지부
- *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비 포함한 총액을 작성
- * 서울 35%, 지방 65% 차등보조 ±10%

□ 3건의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그 이상의 연령으로 상향하고 있는바, 한병도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은 각각 18세 미만으로, 박민규의원안은 19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한병도의원안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고, 8세 이상 18세 미만 경우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반면 이수진의원안은 연령 구분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음.

< 개정안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

	현 행	한병도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민규의원안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	<u>18세</u> 미만 아동	<u>18세</u> 미만 아동	<u>19세</u> 미만 아동
월 지급액	10만원	0~7세: 10만원 <u>8~17세: 20만원</u>	<u>30만원</u>	10만원

1)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단계적 확대)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급연령의 경우 2018년 6세 미만 지급을 시작으로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비해,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만원으로 동일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액 변경 현황 >

확대 시기	2018. 9	2019. 9.	2022. 4.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 미만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액	10만원	10만원	10만원

-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 >

(단위: 만원)

자녀 관련 지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사교육비 포함	60.6	78.5	91.9
사교육비 제외	51.7	35.8	41.3

자료 : 보건복지부(「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pp.269~p.2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²⁾.

<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



□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15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9개국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7개국임.

< OECD 아동수당 지급 국가의 연령 구분 >

지급연령	국가수	국가명
8세 미만	1	한국
15세 이하	8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
17세 이하	18	핀란드(16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
18세 이상	4	일본(18세), 에스토니아(18세), 프랑스(19세), 체코(25세)
합계	31	

자료: 보건복지부

2) 이소영,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44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5. 27.

- 한편, 기본 수급연령에 도달해도 아동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국가는 18개국임.

<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받을 경우, 지원연령을 확대하는 국가 >

국가	기본 수급연령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시	국가	기본 수급연령	학생, 직업훈련 등 교육시
아일랜드	16세 미만	18세 미만	리투아니아	18세 미만	23세 미만
영국	16세 미만	20세 미만	오스트리아	18세 미만	24세 미만
라트비아	16세 미만	20세 미만	그리스	18세 미만	24세 미만
스웨덴	16세 미만	21세 미만	폴란드	18세 미만	24세 미만
포르투갈	16세 미만	24세 미만	독일	18세 미만	25세 미만
스위스	16세 미만	25세 미만	룩셈부르크	18세 미만	25세 미만
슬로바키아	16세 미만	25세 미만	벨기에	18세 미만	25세 미만
이탈리아	18세 미만	22세 미만	에스토니아	19세 미만	20세 미만
헝가리	18세 미만	23세 미만	프랑스	20세 미만	연령제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6만 5,000원, 독일은 월 약 37만 1,000원, 영국은 약 18만원 등을 지급 중임.

< OECD 주요국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 >

국 가	지 급 액	원화 환산액 (‘24.6월 환율기준)
스웨덴	월 1,250 크로나	월 165,000원
독 일	월 250 유로	월 371,000원
영 국	(첫째) 주 25.6 파운드 (둘째 이상) 주 16.95 파운드	주 45,000원 (4주: 180,000원) 주 29,800원 (4주: 119,200원)
캐나다	(6세 미만) 연 최대 6,833 달러(월 583 달러) (6~17세) 연 최대 5,903 달러(월 492 달러)	월 583,000원 월 492,000원
일 본	(0~2세) 첫째·둘째 15,000엔, 셋째이상 30,000엔 (3세~고등학생) 첫째·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30,000엔	월 131,300원, 월 262,300원 월 87,500원, 월 262,300원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한병도의원안은 연 평균 9조 7,000억원, 이수진의원안은 연 평균 19조 2,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³⁾.

<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조원)

구분	한병도의원안		이수진의원안	
	합계	연 평균	합계	연 평균
합계	48.5	9.7	96.0	19.2
- 국비	36.7	7.3	72.5	14.5
- 지방비	11.9	2.4	23.5	4.7

- 주: 1) 국비는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을 75.55%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의 0~17세 각 세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질 경우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 외, 한병도의원안에서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병도의원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수급아동 본인에게 아동수당을

3) 박민규의원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2024. 8. 7. 현재 비용추계가 이루어지지 미완료된 상태임.

지급하려는 취지로 아동수당의 수혜자는 아동이라는 점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수급아동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아동수당을 18세 이상까지 지급하거나 직업훈련 등으로 지급이 연장되는 국가 중 체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은,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청구)하는 국가 현황 >

국가	직접청구 가능나이	주요 내용
체코	18세이상	-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함
이탈리아	18세이상	- 18세 이상은 본인이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룩셈부르크	18세이상	- 18세 이상의 성년 아동(adult children)은 가족수당을 직접 지급받도록 청구할 수 있음(고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직접 청구 불가)
폴란드	18세 이상	- 18세 이상이고 학업중에 있으며 부모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예: 부모의 사망) 아동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음
포르투갈	18세 이상	- 18세 이상은 직접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주: 덴마크와 핀란드는 지급대상 연령이 각각 만 17세 미만, 만 18세 미만인 경우라도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합한다고 연금청에서 판단하거나, 학업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요건 만족 시 아동이 직접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연구(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을 지속 확대 중이고,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는 재정이

4)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안 제7조제6항 수단 및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도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크게 소요되는바, 타 양육지원제도와와의 관계,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성, 재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수급아동에 대한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고, 아동수당 직접 지급 관련 해외사례와 같이 만 18세 이후 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 중으로 아동수당 확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된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는 아동수당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⁵⁾이므로 추가 재원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00

5)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는 2019년 15조 1천억원에서 2023년 20조 1천억원으로 연 평균 7.3%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